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-4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6. 4. 21.

제안자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남녀평등 참여 시책에 부합하도록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42조제2항)
  -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